

 <b>보도자료</b>	<b>12.28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</b>	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, 은행과, 자본시장과, 중소금융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	
책임자	권대영 과장(2156-9710)	담당자	고영호 서기관(2156-9711) 전수한 사무관(2156-9717) 서준 사무관(2156-9713)
	이윤수 과장(2156-9810)		이인욱 사무관(2156-9811)
	이형주 과장(2156-9870)		박재훈 사무관(2156-9871)
	신진창 과장(2156-9850)		고상범 서기관(2156-9861)
	최성일 감독총괄국장(3145-8300)		이진석 부국장(3145-8001)
배포일	2015. 12. 24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13매

## 제 목 :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

-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-

### 1.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① [주소 일괄변경서비스]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(1.18일)
- ② [크라우드펀딩]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(증권형)이 나옵니다.(1.25일)
- ③ [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]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·적금, 연금저축,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.(1월)
- ④ [계좌이동서비스]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,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(2월)

- ⑤ [만능통장 ISA]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,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(1분기)
- ⑥ [비대면설명확인] 증권사,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.(1분기)
- ⑦ [보험다모아] 보험다모아([www.e-insmarket.or.kr](http://www.e-insmarket.or.kr))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(4월)
- ⑧ [인터넷전문은행]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합니다.(하반기)

## 2.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.

- ⑨ [IC단말기 전환서비스] 영세가맹점(연매출 2억원 이하)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드립니다.(1월)
- ⑩ [서민지원 강화] 저신용·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햅살론 등 정책 자금이 5.7조원 규모로 전년(4.5조원)에 비해 확대됩니다.(1월~)
- ⑪ [신용카드 수수료 인하]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·중소가맹점주 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(0.7%p 인하) 냅니다.(1.31일)
- ⑫ [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]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·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(1분기)
- ⑬ [기술금융 활성화]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·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.(1분기)

### 3.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.

- ⑭ [실손의료보험 개선]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, 해외에 계실 때(3개월 이상)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(1월)
- ⑮ [자금세탁방지]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, 실제 소유자의 성명,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.(1월)
- ⑯ [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] 대출을 받을 때, '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' '처음부터 나누어' 갚습니다.(수도권 2월 / 비수도권 5월)
- ⑰ [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] '민원24'(www.minwon.go.kr)를 통해 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(3월)
- ⑱ [자동차보험 개선]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.(4월)
- ⑲ [저축은행 꺼기 금지]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·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(4월)
- ⑳ [대출 청약철회권] 은행, 저축은행,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(2분기)

[붙임1]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요약

[붙임2]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세부내용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듣겠습니다  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## [붙임1]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요약

1.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	
①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(1.18일)	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② 크라우드펀딩 (1.25일)	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<b>크라우드펀딩(증권형)</b> 이 나옵니다.
③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(1월)	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·적금, 연금저축,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.
④ 계좌이동서비스 (2월)	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,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⑤ 만능통장 ISA (1분기)	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,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<b>비과세혜택</b> 도 받을 수 있습니다.
⑥ 비대면실명확인 (1분기)	증권사,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.
⑦ 보험다모아 (4월)	<b>보험다모아</b> (www.e-insmarket.or.kr)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⑧ 인터넷전문은행 (하반기)	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<b>인터넷전문은행</b> 이 출현합니다.
2.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.	
⑨ IC단말기 전환서비스(1월)	영세가맹점(연매출 2억원 이하)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드립니다.
⑩ 서민지원 강화 (1월)	저신용·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<b>햇살론</b> 등 정책자금이 5.7조원 규모로 전년(4.5조원)에 비해 확대됩니다.
⑪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(1.31일)	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·중소가맹점주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(0.7%p 인하) 낱니다.
⑫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(1분기)	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·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⑬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(1분기)	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·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.
3. 소비자 등 금융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.	
⑭ 실손의료보험 개선(1월)	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, 해외에 계실 때(3개월 이상)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⑮ 자금세탁방지 (1월)	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, 실제 소유자의 성명,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.
⑯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	대출을 받을 때,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습니다. ( <b>수도권 2월 / 비수도권 5월</b> )
⑰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(3월)	'민원24'(www.minwon.go.kr)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⑱ 자동차보험 개선(4월)	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.
⑲ 저축은행 꺾기 금지(4월)	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·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⑳ 대출 청약철회권 (2분기)	은행, 저축은행,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
## [붙임2]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세부내용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<b>1.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</b>				
1	금융거래수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도입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금융회사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일일이 변경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해주는 서비스를 시행</li> </ul>	「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」추진 ("16.1.18.)	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(3145-8635) 소비자보호총괄국 (3145-8685)
2	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	<p><b>(신규도입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 시행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‘온라인 증개’를 영업으로 하는 “온라인소액투자증개업” 신설</li> <li>온라인소액투자증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(크라우드펀딩)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</li> <li>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투자자보호 장치* 마련</li> </ul> </li> <li>* 투자금액 제한(일반투자자 연간 동일기업에 200만원, 총 500만원 등), 기업의 발행금액 제한(연 7억원) 등</li> </ul>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'16.1.25.)	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 (2156-9796)
3	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금융 상품만 비교공시하고 있어 타 업권에서 취급하는 유사한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곤란*</li> </ul> <p>* 예·적금, 대출상품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은행연합회,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협회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건을 비교·확인</p>	'16.1월중 (사이트 오픈 예정)	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(02-3145-5693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전 권역의 유사한 금융상품<sup>*</sup>을 한 화면에서 비교 가능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정기예금 및 적금,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, 연금저축 등</li> </ul> </li> </ul>		
4	계좌이동서비스 실시 확대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Payinfo 홈페이지(www. payinfo.or.kr)를 통해 계좌이동서비스 제공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이용채널 확대('16.2월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○ 자동납부 변경서비스 범위 확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'15.10월말)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%(통신·카드·보험 3개 업종) → ('15년말) 약 90% → ('16.6월말) 100%</li> </ul> </li> <li>○ 자동송금<sup>*</sup>에 대한 변경서비스 개시('16.2월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·이체 금액·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</li> </ul> </li> </ul>	'16년 상반기	<p>금융위원회 은행과 (2156-9812)</p> <p>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(3145-8031)</p> <p>금융결제원 (1577-5500)</p>
5	만능통장(ISA) 도입	<p><b>(신규도입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장 하나에 예금 뿐만 아니라,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, 연간 2,000만원 한도내 3~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<sup>*</sup> 부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총 급여 5,000만원이하 근로자, 종합 소득 3,500만원이하 사업자 : 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, 250만원 초과분 9%분리과세</li> <li>* 그 밖의 가입자 : 운용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, 250만원 초과분 9%분리과세</li> </ul> </li> </ul>	조세특례 제한법 (‘16.1.1.)	<p>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2156-9892)</p>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6	금융거래시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 금융권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('15.12.1)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은행 외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('16.1분기)</li> <li>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</li> </ul> <p>*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활용 여부 및 도입 시기는 각 금융회사 자율 판단사항</p>	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(16.1분기)	금융위원회 은행과 (02-2156-9813)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(02-2156-9491)
7	보험다모아 상품비교 및 판매 기능 강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동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의 경력을 반영한 실시간 보험료 조회 불가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실제* 본인 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비교</li> </ul> <p>* 사고유무 등 경력을 반영</p>	협회 공시지침 (16.4월)	금융위원회 보험과 (2156-9835)
8	인터넷전문은행 도입	<p><b>(신규도입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거래의 시·공간적 제약 해소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점포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이용 가능</li> </ul> </li> <li>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 확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 지원</li> </ul> </li> <li>간편결제·송금 서비스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절감되는 결제·송금 수수료를 고객과 판매자에게 혜택으로 제공</li> </ul> </li> <li>로봇 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알고리즘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·관리하는 자산관리서비스 제공</li> </ul> </li> </ul>	'16년 하반기	금융위원회 은행과 (02-2156-9811)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(02-3145-8022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<b>2.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.</b>				
9	찾아가서 IC단말기 전환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5.7.21일부터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IC단말기 설치 의무화</li> <li>○ '15.7월부터 영세가맹점에 무료로 IC단말기를 설치해주는 전환기금 사업 개시(여신협회 주관)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맹점이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전환기금사업자가 가맹점을 찾아가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'찾아가는 서비스' 개시</li> </ul>	여신협회 신규서비스 '16.1월부터 시행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2156-9853)  여신협회 종합기획부 (2011-0725)
10	서민지원 강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신용·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, 미소금융, 새희망홀씨, 바꿔드림론 등 4대정책 금융상품을 연간 약 4.5조원 지원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보다 경감시키기 위하여 4대 정책상품 공급 규모를 연간 5.7조원 수준으로 약 1.2조원 확대 공급</li> </ul>	-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2156-9478)
11	신용카드 수수료 인하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1.5% 우대수수료율 적용</li> <li>○ 연매출 2~3억원 이하 가맹점에 2.0% 우대수수료율 적용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0.8% 우대수수료율 적용</li> <li>○ 연매출 2~3억원 이하 가맹점에 1.3% 우대수수료율 적용</li> </ul>	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('16.1.31.)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2156-9853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12	창업기업 보증 지원시 연대보증폐지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업기업 중 일부 기업(창업 3년이내, 기술등급 BBB이상)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입보책임을 면제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업 5년이내 기업이 신규로 신·기보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, 연대보증 입보를 하지 않고 보증을 제공(전면면제)</li> <li>우수한 창의·혁신형 기술이 있는 창업가라면 '실패에 대한 두려움' 없이 창업이 가능해짐으로써 모험형 창업이 확산되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</li> </ul>		<p>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(2156-9752)</p> <p>신·기보 내부 규정 (16.1분기)</p> <p>신용보증기금 (1588-6565)</p> <p>기술보증기금 (1544-1120)</p>
13	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심사방식이 없어 우수 기술기업의 발굴 및 투자가 곤란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엔젤투자자, 벤처캐피탈 등 투자 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 개발·보급</li> <li>금융기관과 기술기업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기술평가에 기반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</li> </ul>	'16.1분기 (평가체계 전산개발 완료後)	<p>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(2156-9671)</p>

### 3.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.

14	실손의료보험 개선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신질환은 진단과 별병시점 확인이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(현재 치매만 보장)</li> <li>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고 있어,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재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(예: 5천 만원)에 미달함에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음</li> </ul>	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(16.1.1.)	<p>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(02-3145-8249)</p>
-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으나, 해외 장기체류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(급여 부분에 한함)은 보장대상에 포함</li> <li>○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</li> <li>○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 도입</li> </ul>		
15	실제소유자 확인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좌를 신규로 개설,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(무통장 송금 등)할 때, 금융회사가 고객의 성명, 주민등록 번호 등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회사가 고객본인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<sup>*</sup>의 신원도 확인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</li> </ul> </li> <li>○ 법인·단체 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를 <b>순차적(3단계)<sup>*</sup></b>으로 찾아 성명·생년월일 기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1단계) 25%이상 지분 소유 → (2단계) ① 임원 등 과반수 선임 주주, ②최다출자자, ③그 외 법인·단체의 사실상 지배자 중 택일 → (3단계) 법인·단체의 대표자</li> </ul> </li> <li>○ 국가·지자체·공공단체·금융회사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확인의무 면제 가능</li> </ul>	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6.1.1.)	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(02-2156-9437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가 있다고 의심되거나,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 실제소유자 파악</li> <li>○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</li> </ul> <p>※ 보도자료 「'16년부터 신규계좌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.(15.11.10)」 참조</p>		
16	<b>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</b>	<p><b>(신규도입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기본방향) 빚은 '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' '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'는 2가지 원칙 구현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<b>1. 소득 증빙자료 객관성 확보</b>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출시 차주 소득을 꼼꼼히 확인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국가기관(국세청) 등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(증빙소득) 우선 확인</li> <li>2)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(인정소득) 가능</li> <li>3) 다만,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으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등으로 추정 (신고소득)</li> <li>4) 3천만원 이하 소액 주담대의 경우 소득 자료가 없어도 대출 가능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고소득을 적용한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으로 취급. 다만, 대출이용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인정(집단대출, 불가피한 생활 자금,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 등)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/ul>	<span style="float: right;">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02-2156-9714)</span>  <span style="float: right;">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(02-3145-8040)</span>  <span style="float: right;">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(02-3705-5704)</span>	<span style="float: right;">수도권 2.1. 비수도권 5.2.</span>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<p><b>2. 분할상환 관행 정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, ‘처음부터 나눠 갚는’ 방식을 적용</li> </ul> <p>1) 통상 거액의 목돈이 필요한 신규 <b>주택구입용 대출</b></p> <p>2) 담보·소득에 비해 규모가 큰 대출 (LTV 또는 DTI 60% 초과시, 다만 DTI 30% 이하인 경우 제외)</p> <p>3) 주택 담보물건이 3건 이상으로 대출이 다수인 경우</p> <p>4) 소득산정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 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 인정</li> </ul> <p>1) 집단대출(중도금·이주비·잔금대출)</p> <p>2) 상속·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</p> <p>3) 자금수요 목적 단기 또는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</p> <p>4) 불가피한 생활자금(예적금 만기도록 등)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</p> <p>5) 그 밖에 은행이 정한 불가피한 사정</p> <p><b>3.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(상승가능금리 적용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상금리인 '상승가능금리'를 적용(실제 금리 인상은 아님)</li> <li>-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환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미리 확인하여,</li> </ul>		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차주 상환능력 대비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고정금리 또는 대출규모 조정 유도 (대출 거절 아님)</li> <li>○ 집단대출, 불가피한 채무인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</li> </ul>		
17	휴면예금 조회 개선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휴면예금관리 재단, 전국은행연합회, 생·손보협회,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휴면 예금정보 조회 가능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정부민원 포털 '민원24'(www.minwon.go.kr)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조회 가능</li> </ul> <p>* '16.3월 대국민서비스 개시 예정</p>	-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2156-9478)
18	자동차보험 약관 개선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가차 사고시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차량을 렌트하여 지나친 렌트비용 발생</li> <li>○ 자차사고 발생후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다음, 다른 사고 발생시 과거 사고의 수리 비용까지 청구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</li> <li>○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·일방 과실로 사고발생시 미수선 수리비 지급제외</li> </ul>	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('16.4월 이후)	금융위원회 보험과 (2156-9831)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(3145-7466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19	저축은행 금융상품 강요행위(소위 '꺾기')금지 규제 도입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축은행 업권 내 금융상품 강요행위 등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소비자 보호 미흡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상품 강요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</li> </ul>	상호저축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(‘16.4월 예정)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2156-9860)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 (3145-6772)
20	대출 청약철회권 시행	<p><b>(신규도입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이 대출 후 단기간의 숙려기간 (7일) 동안 대출의 필요성, 금리·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한 후 불이익 없이 계약 해제 가능</li> <li>○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(기간내 미상환시 채무 불이행정보 신용정보로 등록), 대출 기록 삭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적용대출 : 리스 제외 일정규모(신용 : 4천 만원, 담보 : 2억원)이하 모든 대출상품</li> <li>** 도입대상 금융회사 : 금융당국 감독·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(은행, 금투, 보험, 여전, 저축은행, 신협, 주택 금융공사)</li> </ul> </li> </ul>	‘16.2분기 (업권별 전산개발 완료後)	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(02-3705-5423) 생명보험협회 전략지원부 (02-2262-6530)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 (02-3702-8565)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실 (02-2003-9421) 여신금융협회 금융부 (02-2011-0765) 저축은행중앙회 법규제도부 (02-397-8655) 신협중앙회 여신지원팀 (042-720-1311)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(051-663-8281)